



# 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협동조합 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

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협동조합의 이사장, 감사 사임에 따른  
임원 보궐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거 종류 : 이사장 및 감사 사임에 따른 보궐 선거

## 2. 임원 선출 정수: 이사장 1인, 감사 2인 임원 임기: 1년 (정관 제51조 3항에 근거함)

### 제47조(임원의 선임)

-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-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제1항, 제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51조(임원의 임기)

-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
### 제15조 [선거]

-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 
이사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사무총장, 국장, 사업본부장으로 한다.  
단, 사업본부장은 해당지역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형식의 서면투표의 방법으로 한다.
- ③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당선인의 결정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. 단,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투표 하여 결정한다.
- ④ 당선인 수가 선출해야 할 조합원 유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추가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.
- ⑤ 이사장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 
단,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.

## 3. (피)선거인의 자격

- 임원 선거 공고일(2024년 01월 15일)까지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자는 (피)선거권을 가진다.
-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조합원을 위해 (피)선거권 회복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명시 한다.

### 제2조 [선거인]

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출자금 및 연회비를 완납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.

**4. 후보자 등록 기간: 2024. 01. 15(수) ~ 01. 26(금) 18시**

- 후보자 등록 방법: 이메일 접수

이메일 주소 : [yeounho@hanmail.net](mailto:yeounho@hanmail.net) (김연호 선거관리 위원장)

#### 5. 후보자 등록 서류

- 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, 이력서, 후보자 추천서

제8조 [등록]

① 정관에서 정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②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신청서, 이력서, 후보자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-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: 홈페이지→조합원 전용→이사회→조합행사→3기임원선거자료

**6. 입후보자 자격 심사 : 2024. 01. 29(월) ~ 01. 31(수)**

**7. 후보자 확정 공고 : 2024. 02. 01(목)**

**9. 선거운동 : 2024. 02. 01(목) ~ 2024. 02. 22(목) 18시**

**10. 보궐 선거 : 2024. 02. 23(금) 제 7차 정기 총회 / 무기명 비밀 투표**

#### 11. 선거 일정

선거 공고 2024.01.15(월)

재적조합원 명단열람 및 (피)선거권 회복기간 2024.01.15(월)~01.31(수) 18시

(피)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2024.02.01(목)

후보자 등록 기간 2024.01.15(월)~2024.01.26(금) 18시

후보자 확정 공고 2024.02.01.(월)

선거운동 기간 2024.02.01(목)~2024.02.22(목) 18시

투표 2024.02.23.(금) 오후

개표 결과 공고 2024.02.23.(금) 오후

#### 12.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

선거운동은 아래 정관 제48조(선거운동의 제한)에 근거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온·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단, 조합원들에 관한 자료는 후보자들에게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,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세 자료 배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(오프라인 발송 1회, 온라인 발송 선거운동 기간 중 수시).

#### 제48조(선거운동의 제한)

-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1.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
가.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
나.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
다. 금전·물품·향응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  2.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
 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- 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
- ③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·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- ④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1. 선전 벽보의 부착
  2. 선거 공보의 배부
  3. 소형 인쇄물의 배부
  4.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
  5.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·팩스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

#### 9.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

##### 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

☎ **일: [yeounho@hanmail.net](mailto:yeounho@hanmail.net)(김연호 위원장)**

**위원장: 김연호(010-9025-0176)**

**위 원: 김명식(010-8963-9856)**

**위 원: 김석호(010-3598-4589)**

**위 원: 배영범(010-9674-2202)**

**2024. 01. 15.**

**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 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김연호**